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
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2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왕규 의원 외 4명
- 발의일자: 2022. 1. 24.(월)
- 회부일자: 2022. 1. 24.(월)
- 검토기간: 2022. 1. 25.(화) ~ 2. 3.(목)

2. 제정이유

-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주체가 되는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의 형성과 올바른 가족가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 ~안 제4조)
- 나. 구청장이 부모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구체적 사항을 명시함(안 제5조)
- 다. 부모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6조)
- 라.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- 마. 부모교육의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해체와 부모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올바른 가정교육과 건강한 가정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주민복지증진 및 건강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
- 대구광역시 또한 2017년 3월 2일 「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 학습 지원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.
- 달서구는 2007년 7월 25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대구달서구가족센터를 설립·운영하고 있으며
- 2017년 11월 21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하여 달서가족문화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 등 정책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.
- 가족구조의 변화로 유아양육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1991년 「영유아 보육법」이 제정되고, 다양한 형태의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음.
- 그러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2,251건으로 2019년 41,389건 대비 2.1% 증가했으며,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25,380건으로 82.1%, 전년대비 11.8% 증가함.
- 최근 자녀 체벌금지와 비폭력 긍정 양육문화 확산 등으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자녀에 대한 기본적 태도, 육아 지식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부모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■ 건강가정기본법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결혼준비교육
2. 부모교육
3. 가족윤리교육
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

족부령으로 정한다.

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

제4조(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)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법

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·교구 등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